

중국	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	----------------

(2014년 5월 22일)
(상하이 aT)

구분	핵심 내용
I 통관	☐ 질검중국 <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시행세칙>에 관한 공고 발표 ○ 2014년 제43호 질검중국에서 발표(4.14) 및 시행예정(7.1)

항목	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2. 품목의 통관/검역	☐ 주요 내용 ○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여 수입식품 업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업계 스스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14일 본 세칙을 제정하고,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○ 질검중국은 각 지역에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을 설치하여 수입식품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수렴, 심사 및 보고하여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<u>통제조치를 실시함</u> (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업체인 경우, <u>기한내 개선, 등록자격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조치를 받게 됨</u>) ○ 다음과 같은 정보에 의거하여 연구 판정을 통해 불량기록을 입력함 - 수입식품 검사검역감독관리 중 식품안전 정보를 발견한 경우 - 업계협회, 업체, 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 정보 - 국제조직, 국외 정부기관, 국외 업계협회, 업체 및 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 정보 -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* 자료원 : http://www.aqsiq.gov.cn/xxgk_13386/jlgg_12538/zjgg/2014/201404/t20140414_409200.htm
	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○ 불량기록이 작성되어 통제조치를 받지 않도록 업계 노력 - 중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통제조치가 강화된 만큼 불량기록이 등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,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실시목록에 등록된 업체는 목록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함
	☐ 발표일자/ 출처 : '14.4.14 질검중국

질검총국의 <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>발표에 관한 공고

2014년 제43호

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업계 자율 규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<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> 및 그 실시조례, <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제품검사법> 및 그 실시조례, <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>(총국령 제144호)와 <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>(총국령 제143호)의 규정에 의거 <수출입식품불량기록관리시행세칙>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,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질검총국

2014년 4월 14일

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

1. 총칙

- 가.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업계 자율 규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<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> 및 그 실시조례, <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제품검사법> 및 그 실시조례 및 <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>(총국령 제144호) 등 관련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.
- 나. 본 세칙은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과 수출업체, 국내 수입업체 및 대리상(이하 '수입식품업체'라 함) 불량기록 사용관리에 적용한다.
- 다.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(이하 '질검총국'이라 함)은 전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며 관련 통제 조치를 확정하여 발표한다.

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, 심사 및 보고하는 책임을 지며 불량기록을 작성하고,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실시한다.

2. 불량기록 발생

질검총국과 각급 검사검역기구는 아래 정보에 근거한 검토 및 판정을 통하여 수입 식품업체 불량기록을 입력한다.

- 가. 수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 중 발견된 식품안전정보
- 나. 국내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업계협회, 업체,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
- 다. 국제조직, 국외 정부기구, 국외 업계협회, 업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
- 라.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

3.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

- 가. 질검총국은 각급 불량기록 관련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원칙(부속문건 1, 2 참조)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발표한다.
- 나.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할 지역의 불량기록 취합하여 보고하고, 엄중한 불량 기록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 판정을 내려 정보를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.
- 다. 질검총국은 전국에서 취합된 불량기록 정보에 대한 검토와 판정을 진행하고, 검토 판정 결론에 근거하여 리스크 조기경보 통보를 발표하고, 불량기록 수입식품 기업에 대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취하여 이를 공포한다.

<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실시목록>에 해당되면서 이미 등록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업체에 대해서는, 국가 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원회가 <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>(총국 2012년 제 145호령)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내 개선, 등록자격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질검총국에 보고한다.

4.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

- 가. 국내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조건(부속문건 1)을 갖춘 경우, 공장등기소재지 또는 최근 12개월 내 수입식품 무역 기록이 있는 지역의 직속 검사검역국에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. 직속 검사검역기구와 질검총국의 등급별 리스크 검토 판정을 거쳐,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, 질검총국은 지체하지 않고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해소한다.
- 나. 국외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조건(부속문건 1)을 갖춘 경우, 소재 국가/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서에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. 해당 국가/지역의 식품안전 주관기관은 기업 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개선조치 및 조사결과를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.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실시하여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

인정된 경우,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.

다. 불량기록이 특정 국가 및 지역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서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 (부속문건 2)을 갖춘 경우, 해당 식품안전 주관기관은 문제 원인 조사 결과 및 감독관리 조치 개선 상황을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.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거쳐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,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.

5. 부칙

가. 전에 질검총국과 각 검사검역기구가 발표한 기타 수입식품 통제조치와 본 세칙이 규정한 통제조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더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한다.

나. 기업이 제출하는 검사측정보고는 아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.

1) 국외의 합법적인 검사측정 역량을 갖춘 검측기구와 국내 식품검사검역기구 자격 인정을 취득한 검사측정기구는 검측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. 필요한 경우 질검총국은 검측기구 명단을 확인하여 공포하고, 동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.

2) 검사측정보고는 수입식품의 생산일자 또는 생산 차수와 일치해야 한다.

3) 불법 첨가물이 검출되어 불량기록 판정을 받은 경우, 검측보고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라. 수입화장품 불량기록 관리도 본 실시세칙을 적용한다.

마. 본 실시세칙의 해석은 질검총국이 담당한다.

바. 본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수입식품 불량기록업체 관리 및 통제조치

리스크 사전경고 조건				조치	리스크 해소 조건		
불합격 항목유형	제품종류	불합격 항목종류	불합격 회수		공공조건	지정시간	지정회수
위생안전 항목	1	1	≥2	불량기록 제품 종류의 불합격항목 검측보고 제출	1. 조치 후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;	6개월	5
	1	≥2	≥4	불량기록 관련 제품종류와적합한식품안전국가표준에기입된항목의 검측보고 제출 (관련표준의"引用"인용표준 포함)		12개월	10
	≥2	≥2	≥8	관련업체 모든제품에 상응한 식품안전국가표준항목의검측보고 및 관련증명서류 제출 (관련표준의"引用"인용표준 포함)		12개월	10
非위생 안전항목	1	1	≥3	불량기록 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 보고제출	2. 조치실시 시간≥지정시간;	6개월	5
	1	≥2	≥6	불량기록 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 보고제출 (관련표준의"引用"인용표준 포함)	3. 조치실시 후매식품수입 회수≥지정회 수	12개월	10
	≥2	≥2	≥12	관련업체 모든제품에 상응한 식품안전국가표준항목의 검측보고 및 관련증명서류 제출 (관련표준의"引用"인용표준 포함)		12개월	10
기타 품질안전 Risk				지정제품의 지정항목 검측보고 및 관련증명서류 제출		12개월	10

주 : 1. 위생안전항목 : 非식용첨가물、금융물질、생물독소오염、식품첨가제기준치이상、미생물오염、오염물、이식유전자성분、방사능

2. 非위생안전항목 : 포장불합격、라벨링불합격、품질、유해생물、증명서류불합격、기타불합격항목

국가 및 지역 전체와 연관된 불량기록 수입식품의 관리 및 통제조치

리스크 사전통보 참고조건					참고조치	리스크 해소 참고조건		
불합격 항목유형	기업	제품종류	불합격 항목종류	불합격 회수		공공조건	지정시간	지정 회수
위생 안전항목	≥2	1	1	≥16	해당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불량기록이 기입된 제품 종류의 불합격항목 의 검측보고 제출	1. 조치후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경우 ;	6개월	100
	≥2	1	≥2	≥32	해당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불량기록이 기입된 모든 제품의 제품종류 에 상응한 식품안전 국가표준항목 의 검측보고제출 (관련표준의"引用"인용표준 포함)		12개월	200
非위생 안전항목	≥2	1	1	≥24	해당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불량기록이 기입된 제품의 제품종류 에 대하여 불량기록이 있는 불합격항목 의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	2. 조치실시시간 ≥ 지정시간 ;	6개월	100
	≥2	1	≥2	≥48		3. 조치실시 후 매식품 수입 회수≥지정회수	12개월	200
기타 품질안전 Risk					해당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지정제품 에 대하여 지정항목 의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청구		12개월	200